

등록일		
W5 3-6	A	45

취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더 큰 족쇄

김재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대표

1. 취업연수생 개요

'93년 11월 26일 노동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법무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94년 5월 말까지 10개국에서 '해외 취업연수생' 2만 명을 들여 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단계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1차 2만 명 도입 추진을 끝내기로 했던 '94년 8월 말, 연말까지 1만 명의 취업연수생을 추가로 더 들여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금년에만 총 3만 명의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새로 입국하게 되었다. 이 발표가, 근래에 상식선을 넘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상태 속에 일하게 된 외국인 취업연수생 문제의 발단이다.

정부는 '92년 6, 7월에 실시한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자진신고' 제도와, 신고한 이들에 대한 4차례에 걸친 출국 연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과 이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시켰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 '인력 수입'에 대해 입장은 분명히 밝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력 수입을 줄곧 반대해온 노동단체들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공식

적으로 인력 수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수생 도입과 함께 불법 체류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기업주와의 마찰과, 항공 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총 외국인 취업연수생은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93년 11월 발표에 따라 금년 5월 말까지 도입키로 한 2만 명의 외국인력 수입은 차질을 빚어 '94년 9월 17일 현재 1만4천8백 명만이 입국하였고, 계속 입국하고 있는 중에 있다. 여기에 기준에 입국해 있던 4천2백 명을 합하면 1만9천명이 된다. 이번 9월 17일까지 입국한 1만4천8백 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8천 명, 필리핀 3천 명, 베트남 2천2백 명, 네팔 8백 명 순이다.

2. 인권 실태

(1) 외국인 취업연수 노동자의 일반 상황

① 모집 당시와 달라진 계약 조건

'월급 16만8천 원(2백10불), 본국에서 한국에 가면, 월급 40만원, 의료서비스와 생필품·숙식 무료 제공, 기술 습득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수 천 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월급은 물론 모든 약속은 인력회사 대표의 연설 한 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모두 울었다고 한다 ('94년 6월 9일 네팔인 최초 입국자). 게다가 또 이들을 송출해 온 인력회사가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1불씩 월급에서 떼어간다. 따라서 실제 한 달 임금은 15만9천2백 원인 셈이다.

② 감시·감금 상태의 한국의 공장 생활

인력회사는 이들의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떼어간 돈으로 무선안테나가 달린 차량과 무전기를 구입하여 밤낮 없이, 일하는 공장에서 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한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회사에서 붙여 주겠다며 달라고 하더니, 편지들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전화도 쓸 수 없도록 금지
를 하고, 여권도 암류한 채 회사 정문쪽
으로도 갈 수 없도록 감시가 철저하다.

그래서 이들은 고국을 떠난지 오래
지만 아직도 고향에 자기가 어디에 있
는지조차 알리지 못했다. 일요일에 작
업을 거부했다가 면纱이 붙잡힌 채 기
게 앞으로 끌려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온 몸은 짖혔다.

게다가 속인 임금 조차도 일부는 본
국으로 보내고, 일부는 출국 때까지 보
증금으로(도망을 막기 위해) 암류 한다
며 인력회사가 회사로 부터 직접 받아
가서 손에 절 수 있는 정식 임금은 매
월 한 푼도 없다. 한국에 오기 위해 인
력회사에 지불하려고 빚 내었던 2,3천
불의 돈은 갚을 길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또 이런 모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에 수갑을 찬 채 인력회사('94년 8월
20일 서울 양천구 소재 동양인력개발)
사무실로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하
기도 했다.

③ 경찰, 언론, 인력회사, 현지 정부 가 평치는 합동작전

이런 처지에서 용감한 사람들은 지
정된 회사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하
지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경찰은 온 도시(목포) 주
변을 포위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와
합동으로 수배 전단을 뿌리며 뒤를 쫓
고 있다. 이같은 처지에서 언론은 이를
을 도망자라고 보도를 한다. 이들을 송
출하는 본국 정부는 송출 전 군사 유격
훈련을 시키며, 뺨을 때리며 모욕을 견
디는 훈련까지 시키고 있다(KBS 1 TV
10월 19, 20일 '세계는 지금' 프로).

이 프로에서 나레이터는 이들이 이
런 훈련을 받고 온 까닭에 한국에서 단
한 명도 나오되어 되돌아 가거나 도망

'월급 16만8천 원(2백10불), 본국에서 한국에 가면, 월급 40만원,
의료서비스와 생필품·숙식 무료 제공, 기술 습득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수 천 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월급은 물론 모든 약속은 인력회사
대표의 연설 한 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모두 울었다고 한다. 게다가 또 이들을
송출해 온 인력회사가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1불씩 월급에서
떼어간다. 따라서 실제 한 달 임금은 15만9천2백 원인 셈이다.

자가 없었다고 하며,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가능케 하는 기
반에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 발표
가 도사리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
업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탈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
역과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 송출 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
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매일경제
'94년 10월 10일).

④ 이들을 노예로 인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길

그런데 근래에 이들을 돋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들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노동하고 있었
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값
싼 연수생 노동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
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쩍 늘어나
정작 자신들은 더 위협 속에 놓이게 되
었지만, 새로 들어온 취업연수생들의
처지가 자신들보다 훨씬 비참한 것을
동정하며, 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망
을 돋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들이
자국으로 발간한 회보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의 만화가 실렸다. 쇠고랑을 찬
외국인 연수생을 인력회사 직원이 줄
을 메달아서 끌고 가고, 그 뒤에 사장
과 정부와 경찰이 서 있는 내용이다.

⑤ 사람파는 장사로 수입 올리는, 정 부가 지정한 인력 송출업체

이런 마당에 정부로부터 취업연수생
도입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는 이들 2만명을 도입하는 과정에
서 수수료를 쟁겨 50억 원의 수입을 올
렸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을 채용한 회
사가 예치한 1백여 억원의 돈으로 이
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19세기 노예상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
94년 현재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일
어나는 실제 이야기이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중간브로커들의 착취와 사기 행
각을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력 수입 정
책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번 8월에 도입을 완료한 2만 명의
경우 애초에는 5월 말까지 도입을 완
료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적인 미숙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3개월이나 그 시
한이 늦어졌다. 입국하려고 하는 현지
국가들에서는 서로 한국에 오려고 아
우성인데 왜 이들의 입국이 늦어졌을
까? 그 이유는 이들의 도입과 관련하여
엄청난 이권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위
탁기관과 중간 인력회사(브로커) 사이
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지난 6월 17일 최초
로 입국한 네팔인 취업연수생의 경우,

네팔 현지에서 모집당할 때 한국에서의 한달 수입은 4백50불~5백 불, 일일 노동시간은 8시간, 연수기간은 1년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위해 최저로 비용을 지불한 경우 1천3백 불(3천 불을 지불한 사람도 있었음)을 인력회사에 지불했고, 기타 신청을 위해 지출한 최소비용 5백 불을 포함 1천8백 불을 소요 경비로 지출했다. 그런데 막상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도 본국으로 송금한다던 임금은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8시간으로 계약한 노동시간도 12시간으로 변한 경우도 많았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지불한 총비용이 1년 간의 한국에 와서 받는 월급(연수비용)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기막힌 사기인지 금방 들통이 난다.

입국 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1인

리고 연수업체들과 송출업체들로부터 보증금으로 겉어들인 7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치해 놓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의 하청을 받고 연수생을 수입하는 산하 연수생 인력관리업체들이 직접 도입과정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와 매월 이들의 임금을 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보관하면서 얻는 수익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임이 분명하다.

기업가들의 집단인 상공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하부기관을 통해 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도 모자라, 이들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겨먹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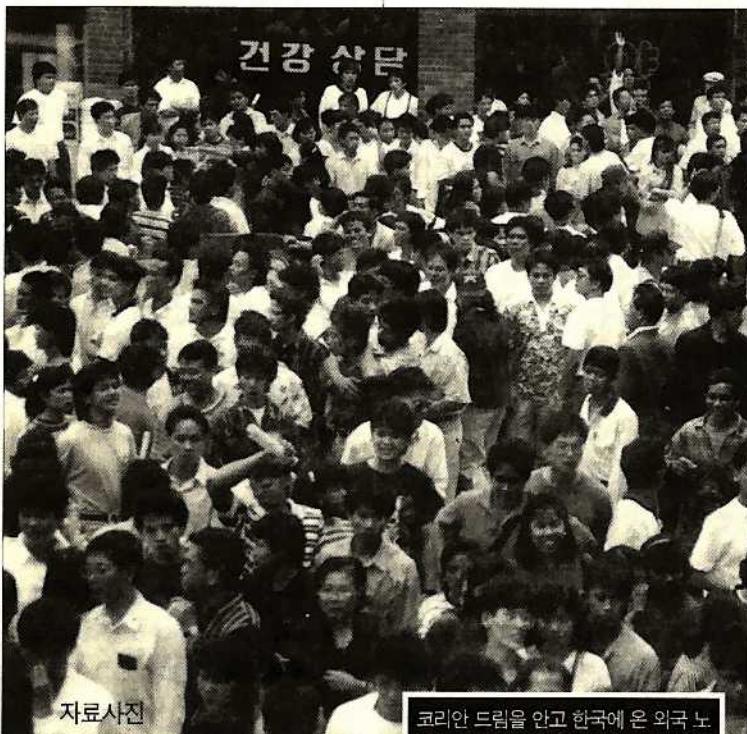
이처럼 취업 연수생제도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노동력 수입임에도 경제력에 의한 현대판 인신매매 제도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가 단체인 상공부(산하 중기협)에 이 문제를 일임하는 현재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중간수수료 없이 이들이 입국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 모집할 때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제시하여, 사기성 인력 도입을 한 인력업체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② 무자격노동자를 양산하는 취업연수생 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취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말이 기술을 배우려 온 연수생이지 사실은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조금도 다름없는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취업연수생이라는



월급이 2백10불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매월 2백10불의 월급 중에서 11불은 인력회사가 인력관리비로 공제해 간다는 사실도 달랐다. 이들은 월급도 인력회사가 매월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가고, 본인들 손에는 당장 한 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입국하였다.

여권은 일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모두 맡겨야 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통보도 받았다. 그리고 지난 9월 초, 본국에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외국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의료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팔고 있다

당 1천3백 불로 최소로 계산해도, 입국 과정에서 지불되는 항공권료 5백 불(네 팔의 경우)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2만 명으로 곱해보면 최소 1백28억 원이 인력수입 과정에 개재 되어 있는 것이다. 연수생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이번 8월 말까지 들여오도록 계획한 2만 명 수입의 도입 과정에서 지금까지 5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들어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주와 중간인력회사(브로커)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임금도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감금, 감시노동 상태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불이익들에 대해서도, 언어소통이 어렵고 낯설은 나라에서 감금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취업연수생을 포함한)의 상태는, 아무런 규제없는 상태에서 자본이 얼마나 만큼 인간을 학대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 노동자 등 어떤 형태이든, 외국인 인력수입은 노동자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받아 들여져야만 한다. 지금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아래 놓여있는, 편법적인 무자격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동력 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③ 노예매매와 같은 인력수입 과정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현지 정부와 한국 정부의 비행이 동시에 폭로되어야 한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수출하는 현지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국인 노동자를 송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입되어 노동하는 연수생을 통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

망자가 많은 경우, 특별히 그 나라에 대해서는 송출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양국 정부는 연수노동자 개인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회사에서 도망 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죽쇄를 채울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정부의 이런 정책은 열악한 저임금과 감시·감금노동을 강제하고, 중간 인력 브로커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취업연수생들은 속아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입국하였으나, 정부의 처

언론은 그동안 3D 업종의 인력난을 정당화 해오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입을 부추겨 왔다. 그리고 취업연수생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 내고 있는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현지 정부가 한국에 송출하는 인력을 군사유격훈련을시키며,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 훈련소를 떠나는 자리에서까지 교관이 뺨을 때리면서 “한국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장면을 방영하였다.

그리고 이런 훈련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온 취업연수생 중 이탈자가 하나도

그런데 근래에 이들을 돋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들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노동하고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값싼 연수생 노동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쩍 늘어나 정작 자신들은 더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새로 들어온 취업연수생들의 처지가 자신들보다 훨씬 비참한 것을 동정하며, 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망을 돋고 있는 것이다

벌이 무서워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 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④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그동안 언론은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노동자를 들여와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은 취업연수생 제도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재 취업연수생들의 처지는 오히려 불법체류 노동자들 보다 훨씬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들의 도망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없었기에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런 언론에 대해 진실보도를 촉구하는 항의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⑤ 감금, 감시노동은 지난친 저임금 노동 유지 수단, 상식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그 산하에 있는 23개에 이르는 국내 인력관리 회사(브로커), 현지국가에서 이들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받았다는 수수료는, 취업연수생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받을 총 임금을 웃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한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연수생은 어렵게 마련한 한국으로의 입국 비용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전혀 다른 계약 조건을 알게 되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자연히 사업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근래에 수백 명에서 천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다.

결국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짐승처럼 쇠고랑에 채워서 묶어놓던지, 아니면 매일 감시, 감금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고, 현지 정부에게

근로기준법에 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본인 외에 친부모, 형제도 받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채무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이다. 현재 취업연수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회사로부터 전액 받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인력회사는 이 돈으로 이자수익을 보는 등의 돈놀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의 이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연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는 인원 배정을 줄이고 하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장 이탈이 필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웃지 못할 감시 작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2백10불이 그 나라 보통 임금의 몇 배라고 하지만, 이들의 입국 경비나 한국에서의 생활 경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만 해도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임금은 대만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 미화 5백40불을 지급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도입이 완료되어서 일하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월 50만 원선까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⑥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개인여권 압류와 공장밖 외출 금지 제도 철폐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간의 자연권은 박탈당해서는 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인권 유린의 한 유형이 개인여권에 대한 압류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권을 기업주에게 압류당하게 된 것은 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정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 개별 기업주, 인력관리회사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법적 대응과 항의, 캠페인 등은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불구의 정신과 영혼을 갖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⑦ 취업연수생의 임금은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본인 외에 친부모, 형제도 받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채무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이다. 현재 취업연수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회사로부터 전액 받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인력회사는 이 돈으로 이자수익을 보는 등의 돈놀이를 하고 있다. 그동안의 이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연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취업 도중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지정회사에서 이탈한 이들의 임금은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한 그가 어떤 피부색, 국적, 성, 신분을 가졌든지 그는 당연히 자신의 노임을 자기 손안에 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연수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채무노동자를 양산하는 전근대적인 노예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